

[전북대학교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 공고 제2023-6호]

2023년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전북대학교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 소소과제  
**「RIS 참여 기관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기획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**

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에서는 「RIS 참여 기관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기획 지원 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31일  
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장

## I 사업 개요

### 1. 사업목적

- (목표) 대학 및 혁신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, 사업화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획서 작성을 목표로 함
  - (기획주체) 미래 수송기기 분야의 제품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
  - (기획지원) 기술사업화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

### 2. 예산

대상	모집 대상 및 기업 수	예산 (백만원)
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모집기업수) 15개</li> <li>•(기업당 지원액) 10,000천원</li> </ul>	150
컨설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모집인원) 30명 내외</li> </ul>	
합계	공고	150

### 3. 사업기간

	1차년도
과제기간	2023.10. ~ 2024.02.

### 4. 공고안내 :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교내공지

## II 지원대상 및 내용

### 1. 지원대상 : 기업 및 컨설턴트

구분	소과제
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(소재지) 전라북도에 본사, 공장, 연구소등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</li> <li>•(사업 분야) RIS 참여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, 미래수송기기 분야의 제품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</li> </ul>
컨설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지역혁신기관 재직 및 재직 경험 보유자</li> <li>•기술사업화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</li> <li>•기술사업화 관련 학과(예, 경영학과, 융합기술경영학과 등)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(수료자 포함)</li> </ul>

### 2. 기술사업화 대상 분야 및 RIS 참여기관 현황

#### ○ 기술사업화 대상 분야: 미래수송기기(자동차, 특장차, 농업용 기계 등)

분야	세부 내용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자동차제조, 자동차 부품 제조</li> </ul>
특수목적 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특수목적차량 제조 및 부품 제조</li> </ul>
농업용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농업용 수송기기 제조 및 부품 제조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미래수송기기 연관 제조 및 부품 제조</li> <li>•미래수송기기 관련 전후방 산업</li> </ul>

#### ○ 지역혁신기관 (RIS 참여기관 현황)

구분	기관 명
대학	전북대, 군산대, 원광대, 전주대, 우석대, 원광보건대, 전북과학대, 호원대
지역혁신기관	<p>자동차융합기술원</p> <p>한국탄소산업진흥원,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</p> <p>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 연료전지 실증연구센터,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, 한국재료연구원 부안 풍력핵심 연구센터</p> <p>농촌진흥청, 한국식품연구원, 생명공학연구원, 식품진흥원, 한국산림복지진흥원,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,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, 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,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</p> <p>전북테크노파크, 전북산학융합원, 캠틱종합기술원, 전북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,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, 전북농업기술원</p>

### 3. 사업 수행 내용

- RIS 참여기관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기획서 작성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행함
  - (기업 수요 분석) 기업 수요 명확화 및 기술탐색, Target 기술 명확화
  - (사업화 가능성 분석) 제품화, 수출 가능성, 기술개발가능성, 비용적 타당성 등 분석
  - (사업화 방안 수립) BM 모델 수립, 개품 개발 전략 수립
  - (추가 기술 개발 방안) 필요시,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 방안 등 수립
  - (보고서 작성) 기술사업화를 위한 니즈, 정책, 사업화 방안정리 등 수행
  - (보고서 양식) 정부 R&BD 기술사업화 과제 양식을 기반 작성

## III 추진일정(안)



※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

## IV 평가방법 및 관련 법규

### 1. 평가개요

- 제출한 계획서를 협력기관에서 구성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심사 및 선정
-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형식적 요건, 항목별 내용의 충실성 등 검토
-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

### 2. 평가위원회 구성

- 서면평가를 위해 협력기관에서 외부위원 평가단 구성·운영
  - 산·학 전문가, 지자체, TP 등이 참여하여 심사의 전문성, 객관성, 공정성 제고

### 3. 평가기준

- 기술개발 역량, 컨설팅 역량
- 기술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

#### 4. 평가항목

##### ○ 기업 평가 항목

구분	평가항목 (가중치)	평가지표
기술개발 역량 (30)	실적 및 인력구성(10)	○ 기술개발 실적 ○ 기획 또는 연구인력 구성
	수행능력 (20)	○ 기술사업화 역량
사업성 (70)	실현가능성 (70)	○ 개발 제품의 차별성 및 독창성
		○ 개발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

##### ○ 컨설턴트 평가 항목

구분	평가지표
중소기업 기술혁신 수행역량 (70)	○ 컨설턴트 전문성
	○ 기업, 연구기관과의 협력 경험
중소기업 R&D 관련 실적 (30)	○ 정부 R&BD 기획·제안 실적

※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,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제출한 계획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

#### 5. 관련법령 및 규정

-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(RIS)사업 사업비 집행지침
- 전북지역혁신플랫폼 『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』 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
- 교육부·한국연구재단 『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』 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
-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
-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

## V 신청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

### 1. 접수기간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3.11.10. 18시까지
- 평가결과 공지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후 협약 진행

### 2. 접수방법

- 신청서류 제출(온라인 접수)
  - 기업 담당자 : sscv@jvada.or.kr ☎(063)214-6336
  - 컨설턴트 담당자 : sscv@jvada.or.kr ☎(063)214-6336
- 최종 선정기업·컨설턴트의 계획서 및 제반 제출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 필요(별도 공지)
- ※ JVADA 주소 : (54892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(전주첨단벤처단지 5동 2층)

### 3. 제출서류 : 신청 시 제출서류

순	제출서류	제출사항	비고
1	2023년도 기술사업화 기획과제 계획서 신청서	사본 1부	기업
2	컨설턴트 Pool 등록 신청서	사본 1부	컨설턴트
3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사본 1부	공통
4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사본 1부	공통 (기업 참여자 전부 작성)

※ 최종 선정기업 및 컨설턴트는 협약 시 위 모든 서류 원본 제출

## VI 기타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
- 2020.01.01.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(사업비)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(이자포함)이 환수될 수 있으며, 제재부가금은 제제조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